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2536
------------	------

2025년 4월 21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안 자 : 유만희 의원 외 27명

나. 제안일자 : 2025년 3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2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25년 4월 21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유만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육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한강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에서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
- 이에 대중교통으로서 한강버스 운영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대중 교통수단 선택권을 보장하며, 수상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강버스 및 선착장 시설과 관련한 근거조항을 마련 하고자함

나. 주요골자

- '대중교통수단'에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을 명시함(제2조제2호라목 신설)
- '대중교통시설'에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3항에 따른 도선장을 명시함(제2조제3호마목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,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5. 4. 5. ~ 2025. 4. 9.

○ 제출의견 : 있음

제출기관	제출의견(요약)
신00 외 11명	- 한강 접근성, 요금 및 소요시간 과다, 기상여건의 영향, 수익성 저하에 따른 재정지원 우려 등으로 대중교통으로서 실효성 문제 제기

라. 관계기관 의견

○ 제출의견

- 교통실 교통정책과¹⁾ : 의견없음

-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²⁾ : 원안가결

· 대중교통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례상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도선을 반영하여 대중교통으로서 지위를 정립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

· 지하철·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과 동등한 지위를 규정함으로서, 타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례상 의무를 부여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익을 증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 함

1) 교통정책과-5794호(2025.4.8.)

2) 기획예산과-2368호(2025.4.11.)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도선과 도선장을 명시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버스(일명 “리버버스”) 및 선착장 등 시설을 대중교통으로서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서울시는 “한강 리버버스 운영계획³⁾” 등을 통해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을 운영하여 시민 이동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김포대교~잠실대교 구간(31.5km)에 한강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, '25년 상반기 운항 개시를 목표⁴⁾로 하고 있음

※ 한강버스 추진경위

- '23.3.13. : 시장 지시사항 67번

런던의 리버버스는 출·퇴근 및 관광 목적 등으로 쾌적하고 빠르게 운행되고 있습니다. 한강에도 이러한 리버버스 운행을 도입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'23.4.3. :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 수립(시장방침 제32호)
- '23.5.17. : 리버버스 도입·운영 추진계획 수립(수상기획과-2902호)

3) 한강 리버버스 운영계획(한강이용증진과-1869호, 24.3.15, 시장방침 제15호)

4) 제330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

- '23.6~7월: 운영사업자 공모(6.15.~7.14.)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(7.21.)
- '23.8~11월 :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협상 (서울시, 이크루즈)
- '23.8.22. :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착수
- '23.9.4.: 리버버스 관련 MOU체결 (서울시-이랜드 그룹)
- '23.9~2월 : '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' 관련 행정절차 이행
 - 공유재산 심의(9.19), 투자심사(10.20),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(12.15)
- '23.10~11월 : SH 참여 방안 협의 (서울시, SH, 이크루즈)
- '23.12월~ :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설계 용역 착수
- '23.12월 : 실시협약(안) 시의회 동의(12.22.) 및 실시협약 체결(12.28.)
- '23.12.29.: 「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정
- '24.2.1.: 한강버스 운영 계획 대시민 발표
- '24.3.15.: 한강버스 운영계획 수립
- '24.5.7.: 선착장 조성 및 접근성 개선 공사 착공
- '24.5.9.: 선착장 상부 부대사업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(기부채납)
- '24.6.26.: 주식회사 한강버스 법인 설립
- '24.7.31.: 한강버스 시범 운항 추진계획 수립
- '24.8.6.: 시범운항 계획, 명칭 및 디자인 대시민 발표
- '24.11.25.: 한강버스 안전기원 진수식 개최
- '25.2.27.: 한강버스 1,2호선 한강 인도

○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법률과 조례를 살펴보면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마목⁵⁾은 “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⁶⁾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”을

5)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
2. “대중교통수단”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.

마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

6)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(정의)

2. “도선사업”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「해운법」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
3. “유선장” 및 “도선장”이란 유선 및 도선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·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.

“대중교통수단”으로 규정하고 있고, 동법 제2조제3호마목7)은 “여객터미널, 선착장, 도선장,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”을 “대중교통시설”로 정의하고 있음

- 한편, 리버버스 운영 근거조례인 「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⁸⁾(이하 “리버버스 조례”라고 한다)」 제2조제1호9)에서는 “리버버스”를 ‘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으로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대중교통수단’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

- 대중교통 수단과 시설에 대한 법률과 리버버스 조례 규정 및 향후 운행 예정인 한강버스와 그 시설물 등의 사용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선과 도선장을 현행 조례의 대중교통수단과 시설에 포함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 리버버스 조례를 고려할 때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

7)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
3. “대중교통시설”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마. 여객터미널, 선착장, 도선장,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

8)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2526)

- '24년 7월 시민공모를 통해 “리버버스”의 명칭이 “한강버스”로 결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(임만균 의원 외 10명 공동발의, '25.3.31)

9)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

1. “리버버스”란 선박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한강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으로,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.

- 다만 한강버스가 현행 조례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부가 운임 징수(제3조의2),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(제5조), 대중교통보건위생(제9조), 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(제10조) 및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(제18조) 등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받는 만큼 서울시는 관련지침 등을 마련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만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3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유만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영철, 김원중,
김재진, 김종길, 김태수,
김형재, 남궁역, 남창진,
민병주, 박 석, 박중화,
박춘선, 서상열, 신복자,
유정인, 윤기섭, 이봉준,
이상욱, 이성배, 이종환,
정준호, 채수지, 최민규,
허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육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한강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「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」에서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.
- 이에 대중교통으로서 한강버스 운영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대중 교통수단 선택권을 보장하며, 수상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강버스 및 선착장 시설과 관련한 근거조항을 마련 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'대중교통수단'에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을 명시함.(제2조제2호라목 신설)
- 나. '대중교통수시설'에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선장을 명시함.(제2조제3호마목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
도선

제2조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선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대중교통수단”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.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라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</u>
<u>라.</u> (생 략)	<u>마.</u> (현행 라목과 같음)
3. “대중교통시설”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	3.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 ~ 라. (생 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마.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선장</u>
<u>마.</u> (생 략)	<u>바.</u> (현행 마목과 같음)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(정의)제2호라목에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을 신설하고, 제2조제3호마목에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유·도선장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